子といういとないませるな



금정소식

	기 관 의 장
선	
선 람	

금정구 구보 호외 제 362-4 2020. 12. 7.(월)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입	버	MI	\neg
\mathbf{H}	Н	νп	ı.

i	日 日 세 구								
0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	:례일부개	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	ଐ2020-13	22호) -			2	

회람				

발 행 : **부산광역시 금정구** 편 집 : 문화관광과(☎519-4074)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0-1322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2. 7.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2. 개정이유
 - O 2019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자치법규 규제개선안 검토 및 반영
 - O 상징물 사용승인 및 사용료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 O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및 어휘를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 확보
- 3. 주요내용
 - O 구가 2종을 조례에 명시하여 상징물로 관리(신설, 별표5)
 - O 상징물 사용승인 및 변경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함(제7조 제2항)
 - O 상징물 사용승인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매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 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상징물 사용유효기간 폐지(제7조 제3항)
 - ▷ 2019-2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요구사항
 - O 사용료 책정기준을 주문(제작)량으로 두어 현실성 있게 함(제8조 제2항)
 - O 사용료의 반환에 대한 규정을 완화(제9조 1호, 2호)
-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전화:519-4011, FAX:519-40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자료 등
- ※ 이 조례의 입법안은 금정구 홈페이지(http://www.geumje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금정구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공지/입찰/고시 > 입법예고)

붙임: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기, 문장 및 사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를 "상징물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 중 ""구 상징물(이하 "상징물"이라 한다)" 이란"를 ""상징물"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예방하는"을 "방문하는"으로 한다.

4. 구가: 별표 5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그 품위가"를 "상징물로서 품위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

정에 따른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바에 따라"를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한 상징물 관리 매뉴얼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브랜드 마케팅 사업

제6조제1항 중 "시행할 수 있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사용자는 제5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상품 주문(제작)량 총금액의 1퍼센트로 하고,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면"을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승인 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 1. 구의 사정으로 상징물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징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효율적으로"를 "효과적으로"으로, "자문하는"을 "심의·의결하는"으로, "설치·운영"을 "설치하여 운영"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구 상징물인 문장이나 브랜드 슬로건 또는 캐릭터를"을 "구 상징물을"로, "취한다"를 "취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8조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٦٦	그 -111 나	고도리	11 H F	기계리니	
	소네는	궁쏘한	덜누너	시행한다.	
'	*		•		
1					
1					
1					



구가(제3조제1항 관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제1조(목적)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를 <u>상</u>	<u>상징</u>
징하는 구기, 문장 및 사물 등에	하는 상징물과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	
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	
<u>라 한다)이</u>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	<u>규정함을 목적으</u>
한 사항을 <u>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구 상징물(이하 "상징물" 이라	<u> "상징물"이란</u>
한다)" 이란 구를 상징하는 구	
기, 문장, 브랜드 슬로건, 캐릭	
터, 동물 및 식물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및 형식) ① 상	제3조(상징물의 종류 및 형식) ①
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4. 구가: 별표 5</u>
<u>4</u> . ~ <u>6</u> . (생 략)	5 . \sim 7 .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
	지와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휘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	4
게 수여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구청을 <u>예방하는</u> 외국사절단과	2 <u>방문하는</u>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구청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구청

했 혀

장은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 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 차를 거쳐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 징물관리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 다.

- 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 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 다.
 - 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규정에 따른 상징물을 사용 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 다.
-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구청 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 3. (생 략)

<신 설>

<u>4</u>. (생 략)

② (생 략)

- 략)
 -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 | 인 사항을 변경하려면구청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 정 아

장은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 경하려는 경우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 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구청장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

----- 상징물로서 품위가

- (2) -----
- --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는 구청장이 정한 상징물 관리 매 뉴얼에 따라-----

|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

- ---할 수 있다.
- 1. ~ 3. (현행과 같음)
- 4. 브랜드 마케팅 사업
- 5. (현행 제4호와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생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현행 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 승 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 다)가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 면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구청

혅 했

③ 상징물의 사용 유효 기간은 승 인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 다.

제8조(사용료 및 납부) ① 상징물을 제8조(사용료 및 납부) ① 제7조의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해당 상품제작, 판매량의 1퍼센트에 해 당하는 금액의 사용료를 납부하여 야 하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금액을 상징 물 사용승인서 교부 시에 납부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료 징 | <삭 제> 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 외하고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부과・징수 규칙」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개 정 안

장에게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5조에 따라 상징물 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 시키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용승 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상 품 주문(제작)량 총금액의 1퍼센트 로 하고,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 야 한다.

-- 해당하는 경우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 제9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 부한 사용료는 승인사항 등에 특 부한 사용료는 사용승인 시 특별 혀 했

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하다.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 ① 구청 장은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 하여 자문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 5. (생 략)
- ②·③ (생 략)
- 제11조(위반 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11조(위반 시 조치사항) ①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 니하고 구 상<u>징물인 문장이나 브</u> 랜드 슬로건 또는 캐릭터를 사용 하는 자에게 「상표법」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

<신 설>

개 정 아

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상징물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 한다.

- 1. 구의 사정으로 상징물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 의 사유로 상징물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 ① ---------- 효과적으로 -----

의결하는 ----------설치하여 운영--

- 1. ~ 5.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구 상징물을 -----

-- 취하여야 한다.

② 제8조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 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징

제362-4호	금정구 -	구보 호외	2020.12.7.(월)
현	행	개 정	안
		수법」에 따른다.	